코로나19 대응



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방안

기존 지원 정책

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



연말까지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

지원대상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사용료율 인하 (국유재산) 3%→1%(2천만원 한도)

(위탁개발재산) 임대료의 50%(2천만원 한도)

인하기간 '20.4.1.~'20.12.31. 신청기간 '20.4.1.~'20.09.28.

※ 재산관리기관에 소상공인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



확대 지원 정책

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



연말까지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

지원대상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상 중소기업(유흥·사행 업종 제외)

사용료 인하 (국유재산) 5%→3%(2천만원 한도)

(위탁개발재산) 임대료의 50%(2천만원 한도)

인하기간 '20.8.1.~'20.12.31. 신청기간 '20.8.1.~'20.10.29.

※ 재산관리기관에 중소기업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 제출

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유예



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유예

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(대기업 제외, 신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제외)

유예대상 '20.8.1.부터 '20.12.31.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 된 사용료 및 대부료

(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, 매각대금, 부당이득금 등 제외)

유예기간 3개월 원칙(추가 3개월1회 연장 가능, 최장 6개월)

신청기간 기존 납부기한까지

※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

연체료 한시 감경



연말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율을 감경(7%~10%→5%)

지원대상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(대기업 제외) 지원항목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

(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, 매각대금, 부당이득금 등의 연체료 제외)

감경내용 '20.3.1.부터 '20.12.31.까지 가산되는 연체이자율을 7%~10%->5%로 감경,

연체기간 불산입

※ 재산관리기관이 일괄조정(신청 불필요)

